



미청구 재산부

법인 청구서 제출에 필요한 증거서류

법인 이름이 저희 데이터베이스나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고 귀하가 사업체, 법인, 비영리 단체, 합자회사, 협회 또는 정부 기관(이하 총칭하여 ‘법인’이라 함)을 대신하여 청구하는 대리인이나 임원으로 이 청구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안내를 따라주시고 청구 처리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1~4 항은 모든 청구에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귀하가 청구하는 재산이 저희 데이터베이스나 웹사이트 목록에 해당 법인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당 법인이 ‘미청구 재산부’로 귀속되었다고 믿어지는 현금화되지 않은 자금(수표, 자기앞 수표, 여행자 수표, 머니 오더, 채권, 이자표 등)의 소유자이라면 역시 아래 안내를 따라주십시오. \$50 미만 현금의 경우, 1~4 항과 5.B.에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작성된 청구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해당 법인을 대신하여 해당 재산을 청구하는 대리인이나 임원이 이에 서명하여야 합니다.(주: 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A. 다음 경우 청구확인서는 공증된 것이어야 합니다.
 - 1) 청구 가치가 \$1,000 이상인 경우
 - 2)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을 청구하는 경우
 - a) 주식
 - b) 뮤추얼 펀드
 - c) 채권
 - d) 사채
 - 3) 대여금고 내용물을 청구하는 경우
 - B. 해당 재산과 관련한 법인이나 소유자가 복수이면 그 재산을 청구하는 각 법인이나 소유자는 청구확인서에 반드시 서명하여야 합니다.
 - 1) 각 청구확인서에 첨부될 증거서류가 같다면 모든 청구확인서를 한꺼번에 같이 제출해도 됩니다. 따로 제출한다면 필요 증거서류를 청구확인서마다 반드시 따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2) 각 법인이나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비율은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 3) 귀하의 법인이 해당 재산의 100%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를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복수 소유자가 보고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의 예:

 - a) 인보이스
 - b) 영수증
 - c) 법원 서류

법인 청구서 제출에 필요한 증거서류 계속

2. 해당 법인의 권한을 지닌 자가 대리인이나 임원에게 그 법인을 대신하여 해당 재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법인 레터헤드에 작성한 ‘권한 위임서’(Letter of Authorization)가 있어야 합니다.
주: 해당 법인이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라면 소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의 예:
 - A. 스케줄 C 를 포함한 소득 신고서(Tax Return)
 - B. 상호등록증(Fictitious Name Statement)
 - C. 사업 면허

3. 청구서를 제출할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나 임원의 현재 운전면허증 또는 사진 있는 주정부 발급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발급 신분증이 없으면 아래에 예시된 서류도 허용됩니다).
 - A. 군인신분증
 - B. 여권

4. 해당 법인의 ‘연방 사업주 신분 증명 번호’(FEIN)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의 예:
 - A. 최근 소득 신고서 사본(개인회사인 경우 반드시 스케줄 C 도 포함)
 - B. FEIN 부여 사실을 보여주는 국세청(IRS) 발급 최근(지난 3년 이내)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
 - C. FEIN 부여 사실을 보여주는 IRS 발급 '인터넷 확인 페이지'
 주: FEIN 확인용으로 IRS 양식 SS-4 나 W-9 은 받을 수 없습니다.

5. 해당 재산을 보고한 회사가 그 재산을 정부로 이관할 때 FEIN 을 제공하지 않아 FEIN 을 토대로 청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저희가 귀하의 청구를 확인하려면 아래 A 또는 B 에 기재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서류가 있으면 청구 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청구 신청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A 와 B 중 해당 서류

- A. 미청구 재산을 이관한 회사가 보고한 주소에서 해당 법인이 운영되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해당 주소는 거주 회계감사관실 미청구 재산 웹사이트 www.sco.ca.gov 에 나와 있습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의 예:
 - 1) 부동산 담보대출 또는 리스/임대 서류
 - 2) 전화 또는 유틸리티 청구서
 - 3) 은행 또는 신용카드 계좌 명세서
 - 4) 사업 면허



법인 청구서 제출에 필요한 증거서류 계속

또는

B. 미청구 재산을 보고한 회사에 해당 법인의 계좌가 있었던 사실 또는 해당 법인이 그 회사와 거래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서류. 이런 서류는 반드시 청구 재산과 관련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의 예:

- 1) 은행 계좌 명세서(미청구 재산의 출처가 은행인 경우)
- 2) 주권(株券) 또는 주식 명세서(미청구 재산의 출처가 투자회사인 경우)
- 3) 법인 이름과 보고 회사의 이름이 나와 있는 인보이스 또는 영수증

상기 필요 서류 이외에도, 해당 법인의 현재 상태가 아래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범주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당 법인이 다른 회사에 합병되었다면 청구 회사의 이름이 보고된 이름과 다른 경우 합병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의 예:

- A. 동업계약서(Partnership Agreement)
- B. 합병 사본
- C. 정관

7. 해당 법인이 해체되었다면 자산이 어떻게 분배되어 합법적인 소유자(들)를 결정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필요 서류입니다.

- A. 법인 해산 규약(Articles of Dissolution)
- B. 자산의 분배를 보여주는 스케줄 K-1 을 포함하는 완전한 최종 소득 신고서

8. 모회사가 자회사의 재산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소득 신고서가 있어야 하며, 모-자회사 관계를 보여주는 IRS 양식 851 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양식은 국세청 웹사이트 www.irs.gov 를 방문하거나 (800) 829-4933 으로 연락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9. 해당 법인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더는 운영되지 않지만 타주에서는 운영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의 예:

- A. 사업 면허
- B. 최근 소득 신고서 사본

10. 해당 법인이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SOS)이나 면허세국(Franchise Tax Board)(FTB)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당하였고 현재 해체되었다면 해당 법인이 현재 ‘해제된 상태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 청구서 제출에 필요한 증거서류 계속

- A. 해당 법인이 SOS 에 의하여 ‘정지’되었다면 현재 ‘해제 상태에 있음’을 입증하는 ‘법인 존속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가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사업체 기록 주문서’(Business Entities Records Order Form)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SOS 웹사이트 <http://www.sos.ca.gov/business/be/information-requests.htm>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SOS 에 (916) 657-5448 로 연락해도 됩니다.
- B. 해당 법인이 FTB 에 의하여 ‘정지’되었다면 현재 ‘해제 상태에 있음’을 입증하는 ‘법인 지위 확인서’(Entity Status Letter)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 지위 확인서는 일선 FTB 사무소의 대민 창구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지위 확인서’ 입수 방법에 관한 의문사항은 FTB 세무 대리인 핫라인 (916) 845-7057 로 문의하십시오.

11. 해당 법인이 수표나 자기앞 수표, 여행자 수표, 머니 오더, 채권, 이자표(총칭하여 원본증서)인 재산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 법인의 자금이 저희에게 있는지 조사하도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 법인의 자금이 저희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청구 법인에 원본증서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청구 법인에 원본증서가 없다면 미청구 재산부에 (800) 992-4647 로 연락하십시오. 후속 안내를 받게 됩니다.

모든 서류를 보내실 곳:

State Controller's Office
Unclaimed Property Division
P.O. Box 942850
Sacramento, CA 94250-5873

이 안내문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우려사항이 있으시면 (800) 992-4647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